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행정안전부 내 사무공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전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정원 관리를 위하여 혁신조직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범정부 정보

시스템 장애 예방·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진단 및 장애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원 5명(5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4.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조직과 및 사회조직과”를 “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 및 안전조직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21호 및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 중 “국방 및 환경 분야”를 각각 “통계, 특허 및 책임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제49조제1항 단서 중 “6명(행정주사 3명, 시설주사보 1명)”을 “5명(행정주사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급 1명)”을 “(5급 1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으로 한다.

제50조제9항 후단 중 “15명을”을 “16명을”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의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50”을 “1,6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08”을 “1,601”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9”를 “5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7”을 “4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7”을 “56”으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4”를 “37”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1”을 “168”로, 행정주사 “84”를 “82”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2”를 “21”로,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5”를 “27”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2”를 “20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을 “9”로,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을 “2”로, 시설주사보 “1”을 “2”로,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을 “31”로,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3”으로,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55”를 “1,647”로 하고, 일반직 계 “1,613”을 “1,60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9”를 “5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7”을 “4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7”을 “56”으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4”를 “37”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1”을 “168”로, 행정주사 “87”을 “85”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2”를 “21”로,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5”를 “27”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2”를 “20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을 “9”로,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을 “2”로,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0”을 “28”로,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3”으로,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09”를 “108”로 하고, 일반직 계 “109”를 “108”로 하며, 행정사무관 “18”을 “17”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109”를 “108”로 하고, 일반직 계 “109”를 “108”로 하며, 행정사무관 “18”을 “1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55”를 “2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55”를 “253”으로 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5”를 “14”로,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3”을 “22”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255”를 “2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55”를 “253”으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5”를 “14”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3”을 “2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62”를 “757”로 하고, 일반직 계 “762”를 “757”로 하며, 행정주사 “17”을 “16”으로, 시설주사 “17”을 “16”으로, 방송통신주사보 “17”을 “16”으로, 방호서기보 “280”을 “279”로, 통신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61”을 “7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61”을 “756”으로 하며, 행정주사 “17”을 “16”으로, 시설주사 “17”을 “16”으로, 방송통신주사보 “17”을 “16”으로, 방호서기보 “280”을 “279”로, 통신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458”을 “4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49”를 “44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07”을 “402”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23”을 “324”로 하고, 일반직 계 “323”을 “3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19”를 “320”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89”를 “88”로 하고, 일반직 계 “89”를 “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8”을 “87”로 한다.

별표 14 제3호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6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13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별표 2의2 및 행정안전부령 제36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안전부 정원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의3]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 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648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1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1
별정직 계	8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비서(7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1
일반직 계	1,606
고위공무원단	3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2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총경	1
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0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0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6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	49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118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전산사무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6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7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8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2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5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전산사무관	30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시설사무관	7
행정주사	85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전산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4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6
행정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2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7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0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공업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1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3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전산주사	30
전산주사 또는 세무주사	3
방송통신주사	3
공업주사	1
시설주사	12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19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4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4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		공업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
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	기록연구사	1
전산주사보	14	통신운영서기	1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사무운영서기	1
시설주사보	3	사무운영서기보	10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5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시설전문관 · 방재안전전문	
전산서기	5	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3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7	전문경력관 가군(속기 담당)	1
행정서기 또는 세무서기	1	전문경력관 가군(서훈 담당)	1
행정서기 ·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4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비서)	1	전문경력관 가군(시험출제담당)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		전문경력관 가군(화생방 담당)	1
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8	전문경력관 가군(국회협력 담당)	1
운전서기	2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행정서기보	12	전문경력관 나군(서훈 담당)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2
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4
운전서기보	5	전문경력관 나군(화생방 담당)	1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1	전문경력관 나군(통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1

소방공무원 계	8
소방령	5
소방경	1
소방위	2
경찰공무원 계	23
치안감	1
총경	1
총경 또는 서기관	1
경정	12
경감	3
경위	5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혁신조직국) ① ~ ③ (생략)	제10조(혁신조직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조직국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정보공개과·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 및 사회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 ----- --- <u>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 및 안전조직과</u>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7의2.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u>
8. ~ 14. (생략)	8. ~ 14. (현행과 같음)
<u>15.</u> (생략)	<u>21.</u> (현행 제15호와 같음)
16.·17. (생략)	16.·17. (현행과 같음)

18. (생 략) 19. · 20. (생 략) ⑩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u>현행 제도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15. <u>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u> 16. (생 략) 17. <u>국민 참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u> 18. (생 략) 19. <u>국방 및 환경 분야 등 행정 조직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20. <u>국방 및 환경 분야 등 행정 조직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⑪ · ⑫ (생 략)	22. (현행 제18호와 같음) 19. · 20. (현행과 같음) ⑩ ----- -----.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6. (현행과 같음) <삭 제> 18. (현행과 같음) 19. <u>통계, 특허 및 책임운영기관</u> ----- ----- ----- 20. <u>통계, 특허 및 책임운영기관</u> ----- ----- ⑪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u>6명(행정주사 3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⑬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안전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2. <u>안전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u>5명(행정주사 3명)</u> ----- ----- ----- -----. ② ----- ----- ----- ----- -----
--	--	---	--

전부령 제13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
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
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시설주
사보 1명)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0</u>	<u>1,643</u>	-7
·	·	·	
·	·	·	
일반직 계	<u>1,608</u>	<u>1,601</u>	-7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9</u>	<u>50</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7</u>	<u>46</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7</u>	<u>56</u>	-1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4</u>	<u>37</u>	+3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71</u>	<u>168</u>	-3
.	.	.	
.	.	.	
행정주사	<u>84</u>	<u>82</u>	-2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u>22</u>	<u>21</u>	-1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25</u>	<u>27</u>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2</u>	<u>200</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0</u>	<u>9</u>	-1
.	.	.	
.	.	.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u>	<u>2</u>	-1
.	.	.	
.	.	.	
시설주사보	<u>1</u>	<u>2</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33</u>	<u>31</u>	-2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 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3</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u>1</u>	<u>2</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5</u>	<u>1,647</u>	-8
·	·	·	
·	·	·	
일반직 계	<u>1,613</u>	<u>1,605</u>	-8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9</u>	<u>50</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7</u>	<u>46</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7</u>	<u>56</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4</u>	<u>37</u>	+3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71</u>	<u>168</u>	-3
·	·	·	
·	·	·	
행정주사	<u>87</u>	<u>85</u>	-2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u>22</u>	<u>21</u>	-1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25</u>	<u>27</u>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2</u>	<u>200</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0</u>	<u>9</u>	-1
·	·	·	
·	·	·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u>	<u>2</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30</u>	<u>28</u>	-2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 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3</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u>1</u>	<u>2</u>	+1
·	·	·	
·	·	·	

[별표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9</u>	<u>108</u>	-1
일반직 계	<u>109</u>	<u>108</u>	-1
·	·	·	
·	·	·	
행정사무관	<u>18</u>	<u>17</u>	-1
·	·	·	
·	·	·	

[별표 3의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9</u>	<u>108</u>	-1
일반직 계	<u>109</u>	<u>108</u>	-1
·	·	·	
·	·	·	
행정사무관	<u>18</u>	<u>17</u>	-1
·	·	·	
·	·	·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5</u>	<u>253</u>	-2
일반직 계	<u>255</u>	<u>253</u>	-2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15</u>	<u>14</u>	-1
·	·	·	
·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23</u>	<u>22</u>	-1
·	·	·	
·	·	·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5</u>	<u>253</u>	-2
일반직 계	<u>255</u>	<u>253</u>	-2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 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15</u>	<u>14</u>	-1
·	·	·	
·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 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 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23</u>	<u>22</u>	-1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62</u>	<u>757</u>	-5
일반직 계	<u>762</u>	<u>757</u>	-5
·	·	·	
·	·	·	
행정주사	<u>17</u>	<u>16</u>	-1
·	·	·	
·	·	·	
시설주사	<u>17</u>	<u>16</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17</u>	<u>16</u>	-1
·	·	·	
·	·	·	
방호서기보	<u>280</u>	<u>279</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61</u>	<u>756</u>	-5
일반직 계	<u>761</u>	<u>756</u>	-5
·	·	·	
·	·	·	
행정주사	<u>17</u>	<u>16</u>	-1
·	·	·	
·	·	·	
시설주사	<u>17</u>	<u>16</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17</u>	<u>16</u>	-1
·	·	·	
·	·	·	
망호서기보	<u>280</u>	<u>279</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58</u>	<u>453</u>	-5
일반직 계	<u>449</u>	<u>444</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07</u>	<u>402</u>	-5
·	·	·	
·	·	·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3</u>	<u>324</u>	+1
일반직 계	<u>323</u>	<u>324</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9</u>	<u>320</u>	+1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9</u>	<u>88</u>	-1
일반직 계	<u>89</u>	<u>8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8</u>	<u>87</u>	-1